



## 에 ————— 關한 小考

### 최 창 규

8. 15 解放後 數 많은 建築 公開懸賞設計가 있었다. 이것은 家築主가 建築에 對한 作品 價値를 認定하고 널리 優秀한 作品을 選擇하는 가장 公平한 方法이다. 그런데 어느 懸賞設計에도 應募數가 적다는 點이다. 外國의 例를 보면 적어서 2, 3百 多은 境遇엔 千點이 넘는다고 한다. 建築人의 比例數보다 우리나라에는 엄청나게 적은데는 반드시 理由가 있다.

8. 15後 해를 거듭해도 이 現象은 如前하다. 아마도 將次 어려운 새로운 方法 없이는 如前하리라.

무릇 懸賞이라 함은 優秀作品의 發掘일 것이다. 作家들의 머리에서 우러나오는 「아이디어」의 表現을 作品化 한 것을 選擇함이다. 그러면 作家의 作品創作에는 表現의 自由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現代藝術은 其結果보다 過程이 重要하다고 한다. 作家가 表現의 方法을 自由로이 驅使하여 完成에 이르는 것이 即 過程인 것이다. 結果의 判斷은 審查委員의 權限이 있으나 公平한 判斷을 期待하고 善意의 競争을 할 때 비로서 優秀作品의 選定도 나아가서는 建築藝術의 發展도 이루어질 것이다.

公開나 指命이나 懸賞에는 嚴格한 規定이 있

어야 한다. 即 應募者의 資格, 時間, 審查方法, 審查結果의 處理, 賞金, 發表時日, 等等이며 其他 事項은 應募 要領書에 明記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公告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 注意할 것은 規定이나 要領書에 家築主의 意向, 計劃, 意見, 其他가 明確히 反映되어야 하겠지만 應募案에 對한 表現의 自由를 規制하는 事由가 있어서는 안되고 即 提出된 圖面案의 規格, 種類 數量等을 制限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이때 까지의 前例를 보면 거의 다 表現의 自由는 말할 것도 없고 甚至於는 著作權도 建築主의 것이고 應募된 一切의 作品도 返還치 않는다는 것이 常識化되어 있다. 왜 著作權이 建築主의 것이 될까? 賞金을 주었으니 내것이라는 것인가? 그렇다면 始初 懸賞이 아니고 入札이고 賞金이 아니고 購買金이 아닌가? 各樣各色의 内容과 「아이디어」가 競合하는데 入札이 될 수는 없다. 入札이란 同一한 條件하에 同一한 結果가 나올적에 入札이 되는 것이지 建築 作品案이 模樣과 内容부터가 다른데 어찌 入札 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著作權은 어디까지나 作家에게 있기 때문에 本設計와 監理 問題가 設計者에게 따르기 마련이고 其 建物에 對한 作品의 責任을 設計者에게 지우고 設計의 誠實性을 期해야 하는 것이다.

公告는 懸賞 意義에 立脚하여 모든 建築人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方法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應募 希望者는 登錄되고 應募 要領書와 基地 測量 圖面이 配布되어야 한다. 모든 問題는 規定과 要領書에 記載된 故로 現場 說明은 基地의 現況과 環境 觀察 뿐임으로 可及的 個別으로 하는 것이 可하다. 理由는 應募者가 서로 열굴을 알게되면 여러가지 理由로서 應募 抛棄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賞金은 可及的 多額일 수록 可하지만 豐想工事費總額의 1%程度면 되겠고 規定이나 要領書에當選者에게 本設計와 監理 問題가 明記된 境遇에 오히려 賞金을 少額으로 하고 其他 入選者나 落選者에게 配當하는 것이 賢明할 것이다. 이것은當選者에겐 名譽와 本設計와 監理가 保障되어 있지만 入選者나 落選者는 그렇지 못한 故로 若干의 經費라도 더려준다는 것은 應募 作品數增加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모든 應募作品엔 暗號番을 記入하고 이 暗號의 秘密性은 嚴格히 保障되어야 한다. 審查委員은 勿論 建築主도 審查結果가 決定될때까지 保障되어야 하며 作品接受證도 暗號對象으로 發給되어야 한다. 萬一 이 秘密이 保障되지 않으면 懸賞이나 審查가 다 意味가 없어지고 만다.

作品審查는 懸賞에서 가장 重要한 問題이고 公平無私가 期해져야 하는 問題이다. 審查委員構成부터가 斯界의 權威者 大家이겠지만 社會의 으로도 人格者만 된다.

審查委員構成數는 7人以上 奇數가 좋고 可及의이면 2, 3人の 外國人을 包含하는 것을 願한다. 이것은 過去의 例를 보아 모든 建築人們의 要望인 것이다. 即 過去 大部分의 懸賞은 作品이 提出되기 前에 今般 懸賞의 當選은 누구 누구다 라고 占치면 거의 90%가 的中하니 어떻게 될 일일까? 過去 外國人을 不參시킨 理由는 即 經費不足 國家體面이라고 한다.

前者는 建築主의 말이고 後者는 審查委員 物望에 있는 建築人의 말이다. 前者は 賞金豫算額에서 支出할 수도 있고 公平한 審查와 優秀作의 選擇이라는 點에서 若干의 經費는 覺悟해야 할 것이다. 後者は 我們의 옛적부터 體面論인데 懼恐하오이다. 아뢰옵 나이다. 사죄옵 나이다. 하다가 亡한 것을 生覺해 보라 體面을 생각하다가 公平을 期하지 못하면 懸賞이 問題가 아니고 그로 因하여 波生되는 諸般 問題가 더 크다 할 것이고 先進國家에서는 體面을 몰라서 外國人을 일부러 審查委員에 招聘하는 것일까?

審查委員名單은 公告時 發表하는 것이 原則이다. 或者는 말한다. 그러면 不正이 있기 쉽다고 韓國의인 思考方式이다. 그렇다면 應募者나 審查委員이 다 같이 不正容疑者가 되겠고 이 不正容疑者の 作品을 不正容疑者가 審查한 結果를 建築主는 時間과 經費를 드려서 懸賞까지 불일 理由가 있는가 어떤 意味에서는 權威와 人格의 所有者가 審查委員이 되면 不正容疑者는 敢히 不正을 生覺치도 못하게 되지 않겠는가? 오히려 建築主가 審查委員에게 壓力, 結託野合, 共謀等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것에 腐心 했으면 한다.

다음은 審查結果 發表라도 좋으니 審查, 經過와 採點表를 公開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여려 意味에서 꼭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即 審查委員들의 公正을 期했다는 證據가 되고 應募者들에겐 좋은 參考資料가 되겠고 나아가서는 建築發展에 良 도움이 되는 것이다. 某委員이 某作品의 平面에 亂點機能에 亂點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면 얼마나 建築研究에 參考가 될 것이다며 또 萬一 不滿이 있다면 其委員과 應募者間에 私的인 對話도 討論등도 할 수 있겠으니 採點表는 期必코 公開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本設計와 監理가 問題되는데 이것은 前記한 바와 같이 當選者 即 製作權 所有者가 擔當해야 할 것은 물론이고 可及의이면 應募全作品을 公開 展示함을 願한다. 이것은 一般에게 宣傳, 參考, 歡心, 批判等의 機會를 주자는 것이다.

落選作品의 反還 問題는 外國의 例대로 經費를 드려서 까지返送을 못할 邪正 要求하는 者에게 찾아가도록 해야한다. 建築主에게 不必要한 것인지만 落選者에겐 努力과 時間과 精力を 기우린 貴한 것이기에返還해야만 한다. 倉庫에 死藏하거나 煙爐의 불쏘시개는 아까울뿐 더러 製作者들에게 비록 落選作이라 할지라도 建築研究의 參考資料가 되고 또 愛着도 있는 것이다.

以上 建築懸賞設計에 對하여 皮相의이나마 其意義와 内容을 大略 記述하였으나 懸賞의 意義에 順應하고公正한 節次 課程을 言으면 建築主는 優秀作品을 選擇할 수 있겠고 建築人은 建築人 대로 研究努力하여 이나라의 建築發展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建築懸賞設計에 關한 모든 問題를 韓國建築家協會가 外國의 前例, 規定을 參考로 하여 우리나라 實情에 알도록 研究하여 册子로 發刊한다고 알고 있다. 이 册子가 나오게되면 建築人은 勿論 모든 建築人에게 參考와 指針이 되리라고 믿는 바이다.

筆者 韓國建築家協會理事  
新進建築研究所所長  
本誌編纂委員